

실손의료비 보장(추가납입형) 무사고할인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 합니다.)은 2011년 4월 1일 이후 갱신이 도래하는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이 부가된 보험계약(이하 「실손의료 보험계약」 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2. (보험료 할인대상 및 보험료 할인)

- ① 회사는 각각의 실손의료비 보장이 일정기간(이하 「무사고 판정기간」 이라 합니다) 동안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고,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갱신되는 경우 「할인적용기간」 동안 매회 납입 할 각각의 실손의료비 보장에 대한 보장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할인대상 및 보험료 할인은 매 갱신시마다 재산정합니다.

<보험료 할인대상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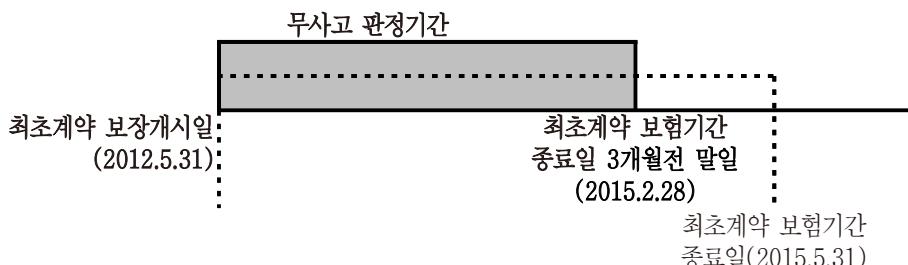
구 분		판정기간내 보험금 지급여부	갱신전후 동일보장내용여부	갱신보험료 할인여부
상 해	입원의료비	—	동일	할인
	통원의료비	지급	—	X
질 병	입원의료비	—	—	X
	통원의료비	지급	동일	X

주) 통원의료비의 경우, 통원치료비 및 약제비 등으로 보장내용이 구분된 경우 각각 적용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도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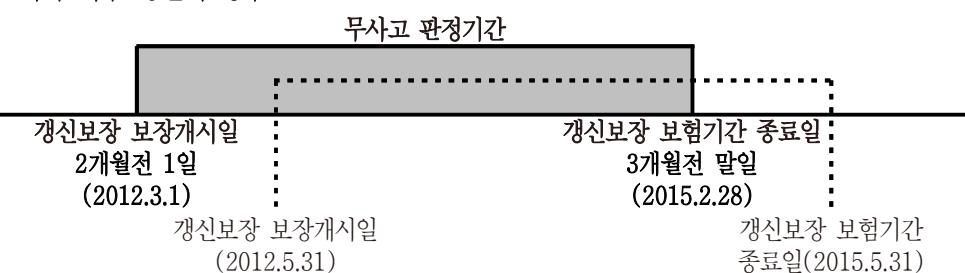
- ② 제1항의 「무사고 판정기간」 이라 함은 갱신보장 보장개시일이 속한 달의 2개월전 1일부터 갱신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갱신의 경우 최초계약 보장개시일부터 최초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무사고 계약의 판정기간(3년갱신 기준) 예시>

1. 최초 갱신의 경우



2. 2회차 이후 갱신의 경우



- ③ 제1항의 「할인적용기간」은 갱신된 실손의료비 보장의 보장개시일부터 해당 보험기간 종료일 까지로 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인금액(각각의 실손의료비 보장에 대한 보장보험료의 10% 합계액)이 실손의료 보험계약의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예정사업비를 한도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할인금액을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관리계좌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2011년 9월30일 이전 대상계약에 대한 소급분 적용에 한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